

##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04

제출년월일 : 1997.6.

제출자 : 서초구청장



### 1.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구청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하되,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함(안 제3조)

-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지원
- 3) 서초구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 4) 기타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없음
-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초구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과 시민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가정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